

성남 천상의집1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

본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를 준용하여 작성한 계약서입니다.



공정거래위원회

표준약관 제10068호

이용자, 제공자 및 대리인(보호자)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.

계약당사자				
이용자 (갑)	성 명	(인)	등 급	등 급
			인정번호	
	주민등록번호		입소일시	
	주 소			
	기 타	☐ 일반 ☐ 40%경감 ☐ 60%경감 ☐ 기초생활 수급권자		
제공자 (을)	시설명	성남 천상의집 1관	시설종류	시설 급여
	대표자 성명	김 은 정 (인)	연락처	031-709-4992
	주 소	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779번길 13 오성프라자 201호		
대리인 또는 보호자 (병)	성 명		관 계	갑의 ()
	생년월일		핸드폰	
	주 소			
	이메일주소			

제1조(목 적)

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(장기요양급여수급자)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제2조 (계약기간)

- ① ‘갑’의 서비스 이용기간은 20 년 월 일 시 분부터 20 년 월 일로 한다.
-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.
- ③ ‘을’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‘갑’ (또는 “병”)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‘갑’ (또는 ‘병’)은 이후 15일 이내에 ‘을’에게 회신하여야 한다.
-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‘갑’ (또는 ‘병’)으로부터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장기요양유 효기간으로 자동연장 된다.(단, 시설의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.)
-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(장기요양 인정등급, 장기요양 급여비용, 비급여 비용 등)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.
- ⑥ ‘갑’ (또는 ‘병’)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전에 소정의 양식에 의해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 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.

제3조 (입소 · 이용료 납부)

- ① ‘갑’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20 년 월 일에 납부하기로 하며,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5일 이내에 납부하기로 한다.
- ② ‘갑’ (또는 ‘병’)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.
- ③ ‘갑’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☐계좌이체 ☐자동이체 ☐기타(생계비)로 한다.
- ④ ‘갑’ 또는 ‘병’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·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 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·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‘갑’ 또는 ‘병’이 별도 부담한다.

등 급	요양급여 (1일당)	비급여		월 평균 이용료(31일 기준)			
		식재료비	간식비	일반(20%)	경감(12%)	경감(8%)	기초수급자
1등급	71,900	9,000	1,500	771,280	592,968	503,812	시설생계비
2등급	66,710	9,000	1,500	739,102	573,660	490,940	
3,4,5등급	61,520	9,000	1,500	706,924	554,350	478,070	

※ 상세 입소비용은 별첨 참조

- ⑤ 식재료비 및 간식비를 제외한 비급여비용(상급병실료, 병원이송료, 의료용품비, 프로그램 이용료, 촉탁의 진료비, 약제비 등)은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의4에 따라 별도 징수한다.
- ⑥ 외래, 입원 등의 의료기관 이용이나 본 원 외의 장소로 외출시 보호자 동행을 원칙으로 하며, 본 원 외의 장소에서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‘갑’ 또는 ‘병’이 해당 기관에 직접 납부한다.

제4조 (계약자 의무)

‘갑’ 과 ‘을’ 그리고 ‘병’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- ① ‘갑’의 의무
 1. 월 이용료 납부 의무
 2.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

3.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유지
4.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
5.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

② ‘을’ 의 의무

1. ‘갑’ 의 건강관리 협조(단, 외출 및 병원 입원 시 간호,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.)
2. ‘갑’ 의 신변 이상 시 ‘병’ 에게 즉시 연락
3.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
4.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
5. 기타 ‘갑’ 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

③ ‘병’ 의 의무

1. ‘갑’ 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
2. ‘갑’ 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
3.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
4. ‘갑’ 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‘을’ 에게 통보
5.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

제5조(이용료 등 수납)

- ①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.
- ② 월 이용료는 매월 5일 이내에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.

입금계좌번호 : 국민은행 279601-04-178935 예금주 : 성남천상의집1관

제6조(계약해지 요건 및 환불)

① ‘갑’ 의 해지

1. ‘갑’ 과 ‘병’ 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, 제2조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“을”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.

② ‘을’ 의 해지

1. ‘갑’ 의 건강진단 결과 『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단될 때
2.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
3. ‘갑’ 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(단, ‘을’ 은 ‘갑’ 또는 ‘병’ 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입을 최고하고 ‘갑’ 또는 ‘병’ 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)

- ③ ‘갑’ 이 계약을 종료했을 때 ‘을’ 에 대하여 이용료 또는 기타 부채가 있을 경우에는 전 항의 환불금에서 공제하며, 환불금이 없거나 그 채무액에 부족할 경우 ‘병’ 이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고 변제하여야 하며,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‘병’ 을 포함한 ‘갑’ 의 보호자를 상대로 소액심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제7조(퇴소)

- ① ‘을’ 은 제6조 2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‘갑’ 또는 ‘병’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- ② ‘갑’ 또는 ‘병’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‘을’에게 제출하고 보관의뢰 및 물품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‘을’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. 단, 사유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‘을’ 또는 ‘병’에게 통보한 후 ‘갑’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‘갑’ 또는 ‘병’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- ③ ‘을’은 ‘갑’이 퇴소 시 퇴소당일을 제외하고 남은 일수만큼 일할계산하고 남은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‘갑’이 지정한(또는 ‘병’)계좌로 7일 이내로 지급한다

제8조(입소물품)

- ① ‘갑’은 시설 입소 시 필요한 개인물품을 ‘을’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.
- ② ‘을’과 협의되지 않은 물품 및 약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‘을’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.
- ③ ‘갑’의 반입물품 중 보관의뢰 및 물품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은 물품을 분실하는 경우 본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9조(면회 및 외출·외박)

- ① ‘갑’의 면회시간은 매일 오전 09:30부터 11:00와 13:30부터 19:00까지로 한다.(단 ‘갑’과 ‘을’ 또는 ‘병’이 동의할 경우 변경할 수 있으나 20시를 초과할 수 없다)
- ② ‘갑’은 외출·외박시 최소 3일전에 ‘을’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- ③ ‘을’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‘갑’ 또는 ‘병’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‘을’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.
- ④ 외출·외박중 ‘갑’에게 신체적·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‘갑’ 또는 ‘병’은 ‘을’에게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- ⑤ 외박은 외박 당일을 포함하여 1회 최대 10일, 월 15일까지만 시행가능하고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수가의 100%를 지불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‘을’은 퇴소 조치할 수 있다.
- ⑥ 외박 기간은 일일 수가의 50%를 적용한다.

제10조(시설관리)

- ① ‘을’은 보건, 위생, 방범,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생활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② ‘을’은 입소자의 편안한 입소생활과 케어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생활실을 재배치할 수 있다.

제11조(건강관리)

- ① ‘을’은 ‘갑’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‘갑’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‘갑’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③ 계약의사의 진료결과 전문병원의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을 경우 ‘을’은 ‘병’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‘병’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④ ‘을’은 입소시 ‘갑’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,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, 갑의 건강유지,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⑤ ‘을’은 ‘갑’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, 투약관리, 욕창관리,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.

- ⑥ ‘을’은 ‘갑’이 계약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, 이상 시 지체 없이 ‘병’에게 통보한다.

제12조(시설물 배상 및 보상의 의무)

- ① ‘갑’은 ‘을’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,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‘갑’ 또는 ‘병’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.
- ② ‘갑’ 또는 ‘병’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‘을’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‘갑’ 또는 ‘병’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- ③ ‘갑’이 입소 중,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했을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부담 및 법적인 책임을 ‘갑’과 ‘병’이 부담한다.

제13조(위급시 조치)

- ① ‘을’은 “갑”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될 때에는 협약병원, ‘갑’ (또는 ‘병’)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‘병’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- ② ‘병’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.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③ ‘갑’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‘을’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‘병’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 단 ‘병’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, ‘을’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.
-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 ‘을’은 ‘갑’의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‘병’과 정산할 수 있다.

제14조(임종 및 장례)

입소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.

-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
1.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‘병’과 협의하여 결정한다.
 2. 장례는 ‘병’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여야 한다.
- ② 무연고자
1.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‘을’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.
 2.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.
 3. 1개월 이내 관할 동(읍, 면)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.

제15조(식사 및 간식)

- ① ‘을’은 1일 3식 및 간식을 ‘갑’에게 제공하며, ‘갑’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. 특별식(경관급식비 등)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/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‘갑’ 또는 ‘병’이 별도 부담한다.
- ② ‘을’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‘갑’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.

제16조(요양실의 배정)

‘갑’의 요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, 입소 후 ‘갑’의 건강상태, 수발조건,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‘갑’ 또는 ‘병’의 의견을 반영하여 ‘을’이 조정할 수 있다.

제17조(개인정보 보호의무)

- ① ‘을’ 은 ‘갑’ 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.
- ② ‘을’ 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‘갑’ 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 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.
- ③ ‘갑’ 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(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) 으로 한다.
- ④ ‘갑’ 은 “을” 이 수집·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.
- ⑤ ‘을’ 은 “갑” 의 사생활을 존중하고,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.

제18조(기록 및 공개)

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주요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,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9조(배상책임)

-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‘을’ 은 ‘갑’ 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.
 1.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‘갑’ 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 2.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‘갑’ 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였을 때
 3.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‘갑’ 을 부상케 하거나,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 4. 학대(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)로 인하여 ‘갑’ 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,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
-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‘갑’ 과 ‘병’ 은 ‘을’ 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 1.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
 2. ‘을’ 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‘갑’ 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 3. ‘갑’ 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 4. ‘갑’ 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, 부주의 및 신체 고령화에 따른 골절 등의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 5. 공동 간병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

제20조(입소 계약서 해석)

- ① 이 계약서에서 규명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.
-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.

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 년 월 일

(을) 성남 천상의집1관 김 은 정 (인)

(갑)

(인)

(병)

(인)

< 별 첨 >

구 분		1등급	2등급	3, 4, 5등급
노인요양시설 요양급여		71,900	66,710	61,520
비 급 여	식재료비(1식)	3,000원		
	간식비	1,500원		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「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」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< (안내)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및 촉탁의 진료비용 >

구분	시설급여	재가급여	촉탁의	
			초진비용	재진비용
일반	20%	15%	3,290원	2,350원
기초수급권자	0%	0%	0원	0원
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	12%	7.5%	1,970원	1,410원
저소득층 (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·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	8%		1,310원	940원

※ [근거규정] 노인장기요양보험법

제40조(본인일부부담금)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.
다만, 수급자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재가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
2. 시설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

◇ 세부내역(30일 기준)

▶ 일반(20%)

구 분	공단 부담금	개인부담금			총계
	요양급여비용	요양급여	식재료비/간식비	소계	
1등급	1,725,600	431,400	315,000	746,400	2,472,000
2등급	1,601,040	400,260	315,000	715,260	2,316,300
3등급 이하	1,476,480	369,120	315,000	684,120	2,160,600

▶ 경감(8%)

구 분	공단 부담금	개인부담금(8%)			총계
	요양급여비용	요양급여	비급여	소계	
1등급		170,370	315,000	485,370	2,444,700
2등급		158,080	315,000	473,080	2,291,100
3등급 이하		145,770	315,000	460,770	2,137,200

▶ 경감(12%)

구 분	공단 부담금	개인부담금(12%)			총계
	요양급여비용	요양급여	비급여	소계	
1등급		255,560	315,000	570,560	2,444,700
2등급		237,130	315,000	552,130	2,291,100
3등급 이하		218,660	315,000	533,660	2,137,200

▶ 기초생활수급자(0%)

구 분	공단 부담금	개인부담금			총계
	요양급여비용	요양급여	식재료비/간식비	소계	
1등급	2,129,700				2,129,700
2등급	1,651,800				1,651,800
3등급 이하	1,976,100				1,976,100

< (안내)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>

1.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

1) 기본원칙

-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,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, 이·미용비이며,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
-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(실비)만을 산정해야 하며,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

2) 세부기준

(1) 식사재료비 : 경관영양 유동식,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

(2) 상급침실 이용료

-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
- 상급침실은 (a)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(파티션, 커튼 등은 불가), (b)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, (c) 노인복지법 시설·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(개정법 6.6㎡)을 충족하여야 함

(3) 이·미용비 :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·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, 단 시설종사자·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, 손·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

2.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: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,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